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8046 |
|----------|------|

발의연월일 : 2021. 2. 9.

발의자 : 정춘숙 · 김상희 · 강선우

민병덕 · 김영진 · 이수진(비)

이수진 · 허종식 · 김정호

장경태 의원(10인)

### 제안이유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서 현재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청 · 장년층의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함. 따라서 손상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막대한 사회 ·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손상으로 인한 사회 ·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후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반면, 미국 또는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들을 적절히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국가가 손상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손상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손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관리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발생의 위험 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장애발생률 등 손상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손상의 예방을 위하여 손상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손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효율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시·도에 광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기초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손상관리센터, 광역손상관리센터 및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손상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2. “손상관리”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손상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손상예방의 날) ① 손상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손상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손상예방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손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손상관리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손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손상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4. 손상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손상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5.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손상관리 관련 의료인 또는 의료업무 종사자
  3. 그 밖에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손상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

· 개발 사업(이하 “손상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손상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등 손상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손상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③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상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손상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손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손상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손상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손상예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손상예방 관련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손상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상원인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앙손상관리센터) ①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손상관리센터(이하 “중앙손상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앙손상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2.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4.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5. 제13조에 따른 광역손상관리센터 및 제14조에 따른 기초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광역손상관리센터) ① 시·도지사는 손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손상관리센터(이하 “광역손상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및 손상조사통계사업 지원
  2. 관할 구역 내 손상 위험요인 확인 및 감시·통제
  3.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4. 손상원인조사 지원
  5. 손상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제14조에 따른 기초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손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시·도지사는 광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 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초손상관리센터) ① 효율적인 손상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보건소에 기초손상 관리센터(이하 “기초손상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기초손상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상연구사업 및 손상조사통계사업 지원
2. 관할구역 내 손상예방사업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기초손상관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및 손상원인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중앙손상관리센터, 광역손상관리센터 및 기초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해당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 지사는 손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관계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손상관리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손상관리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손상관리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